|  |  |  |
| --- | --- | --- |
| **자본계정 환전 관리 정책의 개혁 및 규범화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회발〔2016〕1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深圳)•다롄(大連)•칭다오(靑島)•샤먼(厦門)•닝보(寧波) 분국, 각 중자(中資)외환지정은행 :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경내 기업들의 경영과 자금운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일전에 일부 지역에서 추진한 시범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 외채자금 환전 관리 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자유환전 및 지급에 대한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 외채자금 환전 관리 방식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국(톈진)자유무역시범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범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범구의 관련 시범 경험을 토대로 기업 외채자금 환전 관리 방식 개혁 시범사업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통지 시행일로부터 경내 기업(중자(中資)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며 금융기구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외채자금은 모두 자유환전 방식으로 환전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자유환전 정책을 통일화 한다.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자유환전이라 함은 관련 정책에 자유환전제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자본계정 외화수입(외화자본금, 외채자금과 해외상장반입자금 등을 포함)에 대하여 경내 기구의 실제 경영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자유환전 비율은 100%로 잠정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 수지 형세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자유환전을 실시함과 더불어 경내 기구는 여전히 지급환전제도(支付結匯制度)에 따라 외화수입을 사용 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의 윈칙에 근거하여 경내 기구의 환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번마다 경내 기구의 직전 환전(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 건의 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준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경내 기구 외화수입의 기존 외화 상태의 경내 이체와 국제 대외 지급은 현행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경내 기구는 원칙 상 은행에서 일대일로 대응되는 '지본계정-환전지급대기계좌'(이하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약칭함)를 개설하여 자본계정 외화수입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경내 기구가 동일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동명(同名)의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 외채 전용 계좌, 해외상장 전용 계좌 및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유형의 자본계정 계좌는 동일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경내 기구가 지급환전 원칙에 근거하여 취득한 위안화 자금의 경우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수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 외채 전용 계좌, 해외상장 전용 계좌 및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유형의 자본계정 외화계좌에서 환전하여 입금되는 자금,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자금, 해당 계좌에서 적법하게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자금, 거래 취소에 따라 반납되는 자금, 규정에 부합되는 위안화 수입, 계좌 이자 수입 및 외환관리국(은행)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 거친 기타 수입.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경영범위 내의 지출, 경내 지분투자 자금 및 위안화 보증금의 지출, 자금집중관리 전용 계좌 및 동명의 환전지급대기계좌로의 이체,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외채 상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전용 계좌로의 이체, 경외 지분 회수 또는 해외상장과 관련한 기타 지출을 위한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대외 지급, 외국투자자의 자본금 감소 및 투자 철수를 위한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대외 지급, 경외 기구가 발생시킨 세금의 원천징수•납부, 경내 국유주주 국유지분 양도 수입의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이체, 경상계정 지출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대외 지급.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위안화 자금으로 외국환을 매입하여 자본계정 외환계좌로 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전지급대기계좌에서 인출되어 담보 또는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위안화 자금은 담보 이행 또는 위약으로 인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원래 경로대로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사용은 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自用) 원칙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및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자체 경영범위 내의 경상계정 지출 및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자본계정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및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의 사용은 이하 규정의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국가의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2)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투자 또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제품 이외의 기타 투자, 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3) 경영범위에 명확하게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非)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4) 자용(自用) 부동산의 건설, 구매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부동산기업 제외).  경내 기구와 기타 당사자 간에 자본계정 수입의 사용 범위를 약정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계약상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내 기구와 기타 당사자 간의 계약 약정이 이 통지와 충돌되어서는 아니된다.  5. 자본계정 수입 및 그 환전 자금의 지급 관리  (1) 경내 기구는 자본계정 수입의 환전 및 지급 수속 처리 시 <자본계정 계좌 자금 지급 명령서>(첨부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환전지급대기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경우 경내 기구는 은행에 자금 용도 증명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경내 기구는 자본계정 수입을 지급 (환전 후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입급하지 않고 직접 대외 지급하는 경우, 환전지급대기계좌에서 위안화로 대외 지급하거나 자본계정 외환계좌에서 직접 대외 지급 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사용하기 위한 수속 신청 시 은행에 자금 용도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고객을 인지하고", "업무를 파악하며", "심사직책을 다하는" 등 업무수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수입 환전 및 지급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진실성에 대한 심사 책임을 진다. 자금 지급 심사 시 매번마다 직전 회 지급 증명자료의 진설성과 준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은행은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환전 및 사용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5년 동안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구 외환 업무 데이터 채집 규범(1.0버전)> 발표 통지>（회발〔2014〕18호）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 외채 전용 계좌, 해외상장 전용 계좌, 기타 유형의 자본계정 계좌, 환전지급대기계좌(계좌 성격 코드 2113)와 관련된 계좌, 국제수지, 경내 이체, 계좌 내 환매매 등 정보를 지체없이 보고•전송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환전지급대기계좌와 기타 위안화 계좌 간의 자금 이체의 경우 경내 수불금 증빙을 작성하여 경내 이체 정보를 보고•전송하여야 하며 '영수증 번호'란에 자금 용도 코드(회발[2014]18호 문건의 '7.10 외환결제 용도 코드'를 참조하여 기입)를 기입하여야 한다. 화물무역 대조검사 항목의 지급을 제외한 기타 이체 건의 거래 번호는 모두 "929070"을 기입한다.  (3) 경내 기구가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은행은 심사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 배경의 진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내 기구를 위하여 지급 수속을 처리해 줄 수 있으며 업무 처리 당일 내에 외환관리국의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하여 외환관리국에 특수 사항 비안(備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경내 기구가 보충 제출한 관련 증명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심사를 마쳐야 하며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하여 특수 사항 비안(備案) 업무의 진실성 증명자료의 보충 제출 상황을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내 기구가 예비금 명의로 자본계정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경내 기구에 상기 진실성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 기구의 예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의 월 누계 지급액이 미화 20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본계정 내의 모든 외화수입의 일괄적 지급환전 또는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모든 위안화 자금의 일괄적 지급을 신청하는 경내 기구가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경내 기구를 위하여 환전, 지급 수속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외환관리국의 사후 감독관리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진일보 강화한다.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 관리방법> 발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및 부대 문서 인쇄발부 통지>(회발〔2013〕21호),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외상장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회발〔2014〕54호)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은행이 처리하는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수입 환전•지급•사용 등 업무에 대한 준법성 지도와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검사는 관련 업무 주체에게 설명서 및 업무자료의 제출 요구, 책임자와 면담, 현장에 출두하여 업무 주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규정위반 상황 통보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2) 자본계정 수입의 환전•지급•사용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내 기구와 은행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자본계정의 환매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내 기구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자유환전 업무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거나 외환관리국의 자본계정 정보 시스템에서 당해 기구의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당해 기구가 설명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기구의 기타 자본계정 업무를 처리해 주거나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통지는 공표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 관리방법> 발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외상장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회발〔2014〕54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 방식을 개혁할 것에 관한 통지>(회발〔2015〕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다국적기업 외화자금 집중운영 관리규정> 인쇄발부 통지>(회발〔2015〕36호) 등 이전의 규정이 이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이 통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서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없이 관할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중자(中資)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를 접한 후 가능한 빨리 관할 구역 내의 지점에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 자본계정관리사(司)에 반영하기 바란다.  첨부 : [자본계정 계좌 자금 지급 명령서](http://www.safe.gov.cn/wps/wcm/connect/f81164004d2420b287db8fe39639345e/资本项目账户资金支付命令函.pdf?MOD=AJPERES&CACHEID=f81164004d2420b287db8fe39639345e)  국가외환관리국  2016년6월9일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和规范资本项目结汇管理政策的通知**  汇发〔2016〕16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  为进一步深化外汇管理体制改革，更好地满足和便利境内企业经营与资金运作需要，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总结前期部分地区试点经验的基础上，在全国范围内推广企业外债资金结汇管理方式改革，同时统一规范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及支付管理。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 在全国范围内实施企业外债资金结汇管理方式改革  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相关试点经验的基础上，将企业外债资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推广至全国。自本通知实施之日起，境内企业（包括中资企业和外商投资企业，不含金融机构）外债资金均可按照意愿结汇方式办理结汇手续。  二、 统一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政策  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是指相关政策已经明确实行意愿结汇的资本项目外汇收入（包括外汇资本金、外债资金和境外上市调回资金等），可根据境内机构的实际经营需要在银行办理结汇。现行法规对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结汇存在限制性规定的，从其规定。  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比例暂定为100%。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适时对上述比例进行调整。  在实行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的同时，境内机构仍可选择按照支付结汇制使用其外汇收入。银行按照支付结汇原则为境内机构办理每一笔结汇业务时，均应审核境内机构上一笔结汇（包括意愿结汇和支付结汇）资金使用的真实性与合规性。  境内机构外汇收入境内原币划转及其跨境对外支付按现行外汇管理规定办理。  三、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纳入结汇待支付账户管理  境内机构原则上应在银行开立一一对应的“资本项目—结汇待支付账户”（以下简称结汇待支付账户），用于存放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并通过该账户办理各类支付手续。境内机构在同一银行网点开立的同名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外债专用账户、境外上市专用账户及符合规定的其他类型的资本项目账户，可共用一个结汇待支付账户。境内机构按支付结汇原则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通过结汇待支付账户进行支付。  结汇待支付账户的收入范围包括：由同名或开展境内股权投资企业的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外债专用账户、境外上市专用账户及符合规定的其他类型的资本项目外汇账户结汇划入的资金，由同名或开展境内股权投资企业的结汇待支付账户划入的资金，由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符合规定的人民币收入，账户利息收入，以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收入。  结汇待支付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的支出，支付境内股权投资资金和人民币保证金，划往资金集中管理专户、同名结汇待支付账户，购付汇或直接对外偿还外债、划往还本付息专用账户，购付汇或直接汇往境外用于回购境外股份或境外上市其他支出，外国投资者减资、撤资资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为境外机构代扣代缴境内税费，代境内国有股东将国有股减持收入划转社保基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经常项目支出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内的人民币资金不得购汇划回资本项目外汇账户。由结汇待支付账户划出用于担保或支付其他保证金的人民币资金，除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均需原路划回结汇待支付账户。    四、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的使用应在经营范围内遵循真实、自用原则  境内机构的资本项目外汇收入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可用于自身经营范围内的经常项下支出，以及法律法规允许的资本项下支出。  境内机构的资本项目外汇收入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的使用，应当遵守以下规定：  （一）不得直接或间接用于企业经营范围之外或国家法律法规禁止的支出；  （二）除另有明确规定外，不得直接或间接用于证券投资或除银行保本型产品之外的其他投资理财；  （三）不得用于向非关联企业发放贷款，经营范围明确许可的情形除外；  （四）不得用于建设、购买非自用房地产（房地产企业除外）。  境内机构与其他当事人之间对资本项目收入使用范围存在合同约定的，不得超出该合同约定的范围使用相关资金。除另有规定外，境内机构与其他当事人之间的合同约定不应与本通知存在冲突。  五、规范资本项目收入及其结汇资金的支付管理  （一）境内机构使用资本项目收入办理结汇和支付时，均应填写《资本项目账户资金支付命令函》（见附件）。结汇所得人民币资金直接划入结汇待支付账户的，境内机构不需要向银行提供资金用途证明材料。境内机构申请使用资本项目收入办理支付（包括结汇后不进入结汇待支付账户而是直接办理对外支付、从结汇待支付账户办理人民币对外支付或直接从资本项目外汇账户办理对外付汇）时，应如实向银行提供与资金用途相关的真实性证明材料。  （二）银行应履行“了解客户”、“了解业务”、“尽职审查”等展业原则，在为境内机构办理资本项目收入结汇和支付时承担真实性审核责任。在办理每一笔资金支付时，均应审核前一笔支付证明材料的真实性与合规性。银行应留存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结汇及使用的相关证明材料5年备查。  银行应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金融机构外汇业务数据采集规范（1.0版）>的通知》（汇发〔2014〕18号）的要求，及时报送与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外债专用账户、境外上市专用账户、其他类型的资本项目账户、结汇待支付账户（账户性质代码2113）有关的账户、跨境收支、境内划转、账户内结售汇等信息。其中，结汇待支付账户与其他人民币账户之间的资金划转，应通过填写境内收付款凭证报送境内划转信息，并在“发票号”栏中填写资金用途代码（按照汇发〔2014〕18号文件中“7.10结汇用途代码”填写）；除货物贸易核查项下的支付，其他划转的交易编码均填写为“929070”。  （三）对于境内机构确有特殊原因暂时无法提供真实性证明材料的，银行可在履行尽职审查义务、确定交易具备真实交易背景的前提下为其办理相关支付，并应于办理业务当日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提交特殊事项备案。银行应在支付完毕后20个工作日内收齐并审核境内机构补交的相关证明材料，并通过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报告特殊事项备案业务的真实性证明材料补交情况。  对于境内机构以备用金名义使用资本项目收入的，银行可不要求其提供上述真实性证明材料。单一机构每月备用金（含意愿结汇和支付结汇）支付累计金额不得超过等值20万美元。  对于申请一次性将全部资本项目外汇收入支付结汇或将结汇待支付账户中全部人民币资金进行支付的境内机构，如不能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银行不得为其办理结汇、支付。  六、进一步强化外汇局事后监管与违规查处  （一）外汇局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国务院令第532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外债登记管理办法>的通知》（汇发〔2013〕19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及配套文件的通知》（汇发〔2013〕21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外上市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4〕54号）等有关规定加强对银行办理境内机构资本项目收入结汇和支付使用等业务合规性的指导和核查。核查的方式包括要求相关业务主体提供书面说明和业务材料、约谈负责人、现场查阅或复制业务主体相关资料、通报违规情况等。  （二）对于违反本通知办理资本项目收入结汇和支付使用等业务的境内机构和银行，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有关规定予以查处。对于严重、恶意违规的银行可依法暂停其资本项下结售汇业务办理。对于严重、恶意违规的境内机构可依法暂停其办理意愿结汇资格或在外汇局资本项目信息系统中对其进行业务管控，且在其提交书面说明函并进行相应整改前，不得为其办理其他资本项下业务或取消业务管控。  本通知自发布之日起实施。《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外债登记管理办法>的通知》（汇发〔2013〕19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外上市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4〕54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的通知》（汇发〔2015〕19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规定>的通知》（汇发〔2015〕36号）等此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及外资银行。各中资外汇指定银行收到本通知后，应尽快转发所辖分支行。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映。    附件: [资本项目账户资金支付命令函](http://www.safe.gov.cn/wps/wcm/connect/f81164004d2420b287db8fe39639345e/资本项目账户资金支付命令函.pdf?MOD=AJPERES&CACHEID=f81164004d2420b287db8fe39639345e)  　　 国家外汇管理局  2016年6月9日 |